

# 대전지방법원

## 제4민사부

### 판 결

- 사 건 2005가합446 보험금  
원 고
1. 이00 (000000-00000000)  
대전 중구 00동 56-10 00주택 00호
  2. 최00 (000000-00000000)  
대전 동구 00동 181
  3. 최00 (000000-00000000)  
대전 중구 00동 284-88
  4. 최00 (000000-00000000)  
대전 서구 00동 1422 000마을 0000동 0000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 피 고
1. 0000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00동 168  
대표이사 유00
  2. 00000어슈어런스컴파니  
미합중국 뉴욕주 10005 뉴욕시 00가 70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00동 136  
대표자 미합중국인 000 게리 먼스터맨

3. 00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001가 1

대표이사 박00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4. 00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000동 60

대표이사 신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이두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변 론 종 결                    2006. 3. 23.

판 결 선 고                    2006. 5. 18.

## 주 문

1. 가. 피고 00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00에게 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6.부터

나. 피고 00000어슈어런스컴파니는 원고 이00에게 50,000원, 원고 최00, 최00, 최00에게 각 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2. 6.부터

다.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00에게 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4.부터

라.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00에게 33,333원, 원고 최00, 최00, 최00에게

각 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5.부터  
각 2006.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00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00에게 100,460,000원,  
나. 피고 00000어슈어런스컴파니는 원고 이00에게 10,050,000원, 원고 최00, 최00, 최  
00에게 각 6,700,000원,  
다.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00에게 58,780,000원,  
라.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00에게 16,700,000원, 원고 최00, 최00, 최00  
에게 각 11,1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보험계약 체결

- (1) 최00는 2000. 12. 6. 피고 0000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0000생명'이라 한

다)와 사이에 별지 제1보험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파워교통안전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제1보험의 약관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 또는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C) 교통재해분류표에 의하면 교통재해에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별표 A)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최00은 2001. 11. 29. 피고 00000어슈어런스컴파니(이하 '피고 00아이지'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제2보험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사통과 실버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제2보험의 약관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최00는 1999. 7. 2.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00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제3보험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단체보장보험(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제3보험의 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재해'에 관하여 제1보험 약관과 같이 규정하고,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최00는 1998. 8. 31. 00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00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

지 제4보험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교통상해보험안전지대(이하 '제4보험'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제4보험의 보험계약 및 그에 기초한 권리, 의무는 00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거쳐 2001. 4. 13.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00생명'이라 한다)가 승계하였다. 위 제4보험의 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재해'에 관하여 제1보험 약관과 같이 규정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각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최00의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

(1) 최00는 평일인 2003. 12. 19. 17:30경 대전 0조0000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지방도로를 부강 방면에서 현도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반대차로에서 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바람에 최00 운전의 위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에 따라 최00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신탄진한일병원에서 슬개골 골절,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 등으로 수술을 포함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그 후 수술 예정이었으나 흉부통증이 악화되고 간경화 등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있어 2004. 1. 9. 내과적 증상 치료 등을 위해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4. 1. 13. 06:58경 선행사인 우심부전, 중간선행사인 중증 폐동맥 고혈압,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이00은 최00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갑 12 내지 15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갑 11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2006. 2. 10.자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2005. 3. 21.자, 2005. 10. 31.자 각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최00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최00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지만 사망원인이 되는 폐동맥 고혈압, 우심부전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00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던 폐동맥혈전색전증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3, 4보험 약관에서 재해의 개념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1 내지 4보험 약관에서 재해 또는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사망과 관련하여 일응 재해로 보이는 외부 요인이 있더라도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어서 그 외부

요인의 사망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외부 요인과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사망 과정에 함께 개입하였다면 사망의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되는 외부 요인만을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최00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원인이 되어 우심부전 또는 폐동맥 고혈압을 일으켜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11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2005. 3. 21.자, 2005. 10. 31.자 각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2호증의 2,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2006. 2. 10.자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2005. 3. 21.자, 2005. 10. 31.자 각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00는 1992년 당뇨병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고, 1996년에는 만성간질환, 2001년에는 C형 간염, 2002년에는 간세포암의 각 진단을 받은 후, 2002. 9.경 간암제거술을 받고 외래를 통한 추적관찰 중이었던 사실, 최00의 선행사인인 우심부전의 발병 원인은 교통사고 후 침상 안정 가료 상태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성 폐동맥혈전색전증이 재발 및 악화되어 우심부전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 최남구의 경우 우심부전과 폐동맥 고혈압에 의하여 우심실에서 폐실질로의 혈류가 저하되어 환기관류 장애가 촉발됨으로써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하여 호흡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일반적으로 색전증은 수술 또는 외상 후 장기적인 침상가료시 정맥계통의 혈

전생성을 유발하고 폐동맥 혈전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고령, 비만, 고혈압, 당뇨, 중풍, 악성종양 등에서도 혈전생성이 잘 유발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최00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25일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폐동맥혈전색전증이 발병하여 중증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행되기에는 매우 빠른 시간인 사실, 한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이윤성, 부교수 이승덕은 이 사건 사고가 최00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10~30%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최00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있었던 만성 폐동맥혈전색전증이 이 사건 사고 후 침상 안정 가료상태에서 재발 및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여질 뿐, 이 사건 사고가 최00 사망의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최00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응급치료비 등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최00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슬개골 골절,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 등으로 수술을 포함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당일인 2003. 12. 19. 신탄진한일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예정이었으나 흉부통증이 악화되고 간경화 등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있어 2004. 1. 9. 내과적 증상 치료 등을 위해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4. 1. 13.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00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 등 상해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고, 비록 입원기간 중 내과적 증상 치료도 받았으나 최00의 사망까지의 입원기간인 26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 등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으로 볼 수 있어 교통재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



건 제1 내지 4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응급치료비 등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이00은 피고 0000생명, 피고 00생명에 대하여 26일의 입원급여금을 구하나, 3일 초과 1일당 지급하는 것이므로 23일의 입원급여금만 인정되고, 피고 00생명에 대하여 응급치료비로 8,000,000원을 구하나, 제3보험의 보험증권상 응급치료비의 지급금액은 “800백원”(80,000원)이므로 80,000원만 인정된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 0000생명은 원고 이00에게 보험금 430,000원[응급치료비 200,000원+재해입원급여금 230,000원 $\{(26\text{일}-3\text{일})\times 10,000\text{원}\}$ ], 피고 00아이는 보험금으로 원고 이00에게 50,000원(병원입원비 150,000원 $\times$ 상속지분 3/9), 원고 최00, 최00, 최00에게 각 33,333원(병원입원비 150,000원 $\times$ 각 상속지분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 00생명은 원고 이00에게 보험금 770,000원[응급치료비 80,000원+입원급여금 690,000원 $\{(26\text{일}-3\text{일})\times 30,000\text{원}\}$ ], 피고 00생명은 보험금으로 원고 이00에게 33,333원(응급치료비 100,000원 $\times$ 상속지분 3/9), 원고 최00, 최00, 최00에게 각 22,222원(응급치료비 100,000원 $\times$ 각 상속지분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는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약정지급기일 3일이 경과한 피고 0000생명, 피고 00아이에 대하여는 각 2005. 2. 6.부터, 피고 00생명에 대하여는 2005. 3. 4.부터, 피고 00생명에 대하여는 2005. 2. 5.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5.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

                 판사      000 \_\_\_\_\_

                 판사      000 \_\_\_\_\_

## 제1보험 내역

과워교통안전보험

(가) 보험증권번호 : 0000000000

(나) 피보험자 : 최00

(다) 보장내용 : 평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2천만원,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8천만원 추가지급, 교통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응급치료비 2십만원,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재해입원급여금 1만원

(라) 보험기간 : 2010. 12. 6.까지

(마)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원고 이00

## 제2보험 내역

무사통과 실버보험

(가) 보험증권번호 : 0000000000000000

(나) 피보험자 : 최00, 원고 이00

(다) 보장내용 : 상해사망시 3천만원, 병원입원비 15만원

(라) 보험기간 : 보험료 미납입 및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만 79세까지 자동갱신,

(마)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 제3보험 내역

무배당단체보장보험

(가) 보험증권번호 : 000000000000

(나) 피보험자 : 최00

(다) 보장내용 : 평일 재해사망보험금 4천만원,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천만원 추가 지급, 교통재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평일응급치료비 8만원, 3일 초과 1일당 입원급여금 3만원

(라) 보험기간 : 2009. 7. 2.까지

(마)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원고 이00

### 제4보험 내역

교통상해보험안전지대

(가) 보험증권번호 : 00000000

(나) 피보험자 : 최00

(다) 보장내용 : 평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원, 교통재해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평일응급치료비 10만원

(라) 보험기간 : 2008. 8. 31.까지

(마)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